

의안번호	제 773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양희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8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3
----------	-----

발의연월일 : 2018년 1월 9일

발 의 자 : 김양희, 정영수, 이종욱
윤홍창, 임병운, 엄재창

1.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징수액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2조 제2항의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관한 별표의 금액 중 일부를 인하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장기사용 시 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별표에 정한 사용료 징수로 명시하며, 같은 조 제6항 제2호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 법령: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마.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81호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의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중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를 인하하고,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한다.

제22조 제5항의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를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2조 제6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 허가)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생 략) 1.(생 략) 2. <u>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 허가)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u>납부하여야 한다.</u></p> <p>⑥(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삭 제></p>																																																																																																																																										
<p>[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p>	<p>[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지역 별</th> <th rowspan="2">시설별</th> <th colspan="3">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시간 까지</th> <th>2시간초과 4시간이하</th> <th>4시간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시 지 역</td> <td colspan="2">보통교실</td> <td>5,000원</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1실당</td> </tr> <tr> <td rowspan="2">체육관 (강당)</td> <td>일시사용</td> <td>25,000원</td> <td>50,000원</td> <td>100,000원</td> <td rowspan="2">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td> </tr> <tr> <td>1개월이상 수시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td> </tr> <tr> <td rowspan="2">운동장</td> <td>일시사용</td> <td>25,000원</td> <td>50,000원</td> <td>100,000원</td> <td rowspan="2">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td> </tr> <tr> <td>1개월이상 수시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td> </tr> <tr> <td rowspan="6">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td> <td colspan="2">보통교실</td> <td>2,500원</td> <td>5,000원</td> <td>10,000원</td> <td>1실당</td> </tr> <tr> <td rowspan="2">체육관 (강당)</td> <td>일시사용</td> <td>15,000원</td> <td>30,000원</td> <td>60,000원</td> <td rowspan="2">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td> </tr> <tr> <td>1개월이상 수시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td> </tr> <tr> <td rowspan="2">운동장</td> <td>일시사용</td> <td>15,000원</td> <td>30,000원</td> <td>60,000원</td> <td rowspan="2">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td> </tr> <tr> <td>1개월이상 수시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지역 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 지 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지역 별</th> <th rowspan="2">시설별</th> <th colspan="3">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시간 까지</th> <th>2시간초과 4시간이하</th> <th>4시간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시 지 역</td> <td colspan="2">보통교실(1실당)</td> <td>5,000원</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 rowspan="2">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td> </tr> <tr> <td rowspan="2">체육관 (강당)</td> <td>일시사용</td> <td>25,000원</td> <td>50,000원</td> <td>100,000원</td> <td rowspan="2">시간당 2,500원</td> </tr> <tr> <td>1개월이상 장기사용</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운동장</td> <td>일시사용</td> <td>25,000원</td> <td>50,000원</td> <td>100,000원</td> <td rowspan="2">삭제</td> </tr> <tr> <td>1개월이상 장기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1,500원</td> </tr> <tr> <td rowspan="6">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td> <td colspan="2">보통교실(1실당)</td> <td>2,500원</td> <td>5,000원</td> <td>10,000원</td> <td rowspan="2">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td> </tr> <tr> <td rowspan="2">체육관 (강당)</td> <td>일시사용</td> <td>15,000원</td> <td>30,000원</td> <td>60,000원</td> <td rowspan="2">시간당 1,500원</td> </tr> <tr> <td>1개월이상 장기사용</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운동장</td> <td>일시사용</td> <td>15,000원</td> <td>30,000원</td> <td>60,000원</td> <td rowspan="2">삭제</td> </tr> <tr> <td>1개월이상 장기사용</td> <td colspan="3">시간당 1,000원</td> </tr> <tr>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지역 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 지 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시간당 2,5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시간당 1,5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 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 지 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 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 지 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시간당 2,5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 지 역 (시 역 의 읍 면 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시간당 1,5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